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가. 국가식품안전표준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 등 4개 표준(의견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식품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을 포함한 4가지 국가식품안전표준(의견수렴안)의 초안을 편집하여 현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2024년 2월 29일까지 국가식품안전표준 관리정보시스템(https://sppt.cfsa.net.cn:8086/cfsa_aiguo)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중인 식품안전국가표준 목록

구분	표준명칭	제정/개정
통용표준 1항		
1	선포장식품 라벨통칙	개정
영양 및 특수선식용식품표준 3항		
2	보조영양보충식품	개정
3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통칙	개정
4	식품영양강화제 비타민K2(합성법)	제정

붙임 : 1. 선포장식품 라벨통칙(의견수렴안) 주요 변경내용

자료원 : 식품안전 표준 및 감측 평가사(2024. 1. 18.)

출처: <http://www.nhc.gov.cn/sps/s7891/202401/4c76bcd234534eb89eb0111acde1c764.shtml>

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영유아 조제 액상분유(이하 '액상분유'라 함)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이 영유아 조제분유(분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진핑 총서기의 식품 안전에 대한 '가장 엄격한 4가지'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액상분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액상분유를 등록 관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 초안)을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모든 관련 기업 및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수정 의견을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제출하기를 바라며, 대중은 아래의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 홈페이지(<http://www.samr.gov.cn>)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내 '인터내셔널(互动)'란에 '모집조사(征集调查)'에서 의견제시 가능
2. tsspsypzcc@samr.gov.cn로 메일발송, 메일 제목은 '식품안전법'(개정 초안) 공개 의견수렴(《食品安全法》(修正草案征求意见稿))'이라고 명시 필요
3. "北京市海淀区马甸东路9号市场监管总局特殊食品司"(우편번호 : 100088)로 서신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봉투에 '《食品安全法》(修正草案征求意见稿)'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

붙임 :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 초안)

자료원 : 시장감독관리총국(2024. 1. 19.)

출처: https://www.samr.gov.cn/hd/zjdc/art/2024/art_b143a2ba4ca74088bc8471833bce5063.html

1. 통관거부사례(2023.12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2월	0303320000	냉동 가자미	315	다렌	필요한 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류 미제공	반송 또는 소각
	2103909000	춘장	150	다렌	아미노산 질소 불합격	반송 또는 소각
	1904100000	쌀과자(딸기맛)	5.46	칭다오	식품첨가제 아인산염 함량초과	반송 또는 소각
	0307439000	냉동 오징어	54,321	칭다오	검역 미허가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1,700	칭다오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1,500	칭다오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240	칭다오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겉라면	237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겉라면	237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겉라면	66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겉라면	66	칭다오	라벨 불합격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480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51.66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15.12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144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624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반송 또는 소각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소각
	1902303000	라면	192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124.8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62.4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96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68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56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129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21.6	칭다오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9.3	칭다오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스파게티	48	칭다오	1. 라벨 불합격 2.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1902303000	라면	84	칭다오	수입 금지된 동물 유래 성분 함유	반송 또는 소각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2024. 1. 24)

출처 : <http://www.customs.gov.cn/spj/xxfw39/fxyj47/4677516/5643566/index.html>

<붙임1>

선포장식품 라벨통칙(의견수렴안) 주요 변경내용

* GB7718-2011 버전과 비교할 시, 주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계획이다.

1. 용어 및 정의

(1) 선포장식품의 정의가 수정되었다. 실제 감독 관리요구에 맞추기 위해 식품 표준 시스템에서 선포장식품의 정의 범위를 통일시킨다. 사전 포장되고 계량 방식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선포장식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격의 정의를 수정하여 선포장식품의 정의와 통일시킨다.

(2) 속성명칭(식품 진실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 디지털 라벨 및 식품 강조 표시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하였다.

(3) 배합원료의 정의가 수정되었다. '식품안전법'의 규정 및 식품첨가제의 분류에 따라 식품영양강화제는 식품첨가제의 범위에 포함되며, 본 표준에서 언급하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영양강화제를 함유하고 있음을 배합원료의 정의에 명시한다.

(4) 개정된 날짜 표시요구에 근거하여, "保质日期"보질기한 및 "保存期"보존기한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다.

(5) 메인 표시면 정의가 삭제되었다. 개정된 표준은 더 이상 주요 표시면을 판정의 기초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기본 요구사항

(1) 2011버전의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표준의 조리와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2) '식품안전법' 제148조의 규정과 연계하여 글자체, 글자크기, 글자높이, 최대표면적 요구사항 등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식적 요구사항을 표준문에서 부록으로 옮기고, 식품 라벨의 관련 내용과 표준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라벨 하자'에 따라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및 업계 부담을 줄인다.

(3) 디지털 라벨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를 기본 요구사항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4)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라벨을 읽는 편의성과 규제 요구를 고려하여 2011버전에서 '판매 단위의 외부 포장을 개봉하고 식별하기 쉬운 경우 해당 내용을 외부 포장에 반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3. 표시내용

(1) 개정된 표준의 의무표시 내용에 따라 일반요구를 수정하였으며, 법령 및 국가식품 안전표준에서 면제된 내용은 의무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식품 명칭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a. 속성명칭이 식품의 진정한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글자체,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하여 식품의 속성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b. 속성명칭의 사용 요구를 규범화하여, 식품명칭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배합원료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수정하였다.

a. 성분의 명칭과 관련하여 성분에는 속성명칭을 표시하고 '성분'(配料) 또는 '성분표'(配料表)를 안내사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성분표'(配料), '성분표'(配料表) 대신 '원료'(原料) 또는 '원료 및 부자재'(原料与辅料)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료의 내림차순은 식품 가공 시 첨가량 '질량계'의 순서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배합원료표의 표시를 표준화한다,

b. 복합원료의 표시와 관련하여 복합원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복합원료의 복합원료를 더 이상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합원료는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와 함께 표시해서는 안 된다.

c. 식품첨가제의 표시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감독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식품첨가제의 표시방식을 수정하여 INS번호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 ②식품첨가제 명칭은 GB 2760, GB 14880 또는 해당 고시, 품질규격 표준에서의 통용명칭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명칭은 그 제법을 포함하지 않는 것, ③표준실시문답에서 언급된 복합식품첨가제, 가공조제 등의 표시방식을 표준본문에 포함시키는 것, ④GB 2760과 통일시키기 위해 식품첨가제가 '반입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d. 가공과정에서 휘발 또는 제거된 성분은 배합원료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e. 배합원료표에 세균종의 표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4) 배합원료 정량 표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a. 어떤 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경우, 개정된 표준에 따라 성분이 첨가하거나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할 시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표준에서 정량 표시의 구

체적인 표시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식품명칭에 함유된 성분이 언급된 경우, 해당 성분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 중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시에 정량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명시하였다.

b.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경우, '무'(无), '미포함'(不含)에 대한 제한적 사용 요구와 '첨가하지 않음'(不添加), '사용하지 않음'(不使用)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추가하였다.

(5) 순중량 및 규격에 관하여, 순중량 및 규격 관련 표현을 조정하고, 사전 포장 계량 식품의 순중량 표시 형식을 추가함과 동시에 순중량 글자 높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부록에 포함시켰다.

(6) 생산자 및 경영자의 주소 표시 요구사항이 수정되었다. 디지털 라벨의 적용과 함께 생산경영자 정보의 표시는 표시면에 구애받지 않아 표준의 타당성을 높인다. 동시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제안을 채택하여 '감독'과 같은 식품 생산 및 경영과 무관한 정보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만 표시해야 함을 규정한다.

(7) 날짜 표시에 관한 요구를 조정하였다.

a. 소비자의 라벨 해독 수요 및 감독관리 수요를 고려하여 날짜 표시 순서는 년, 월, 일 순서만 유지하고 기타 표시 순서는 취소하였다. '음식물 낭비방지법'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보질기한(保质期,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선포장식품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였다. 보존기한(保存期)을 선택적 표시 내용으로 추가하여 소비자가 식품 구매 후 합리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도록 안내하고 음식물 낭비를 방지한다.

b. 보질기한(유통기한, 保质期)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최대 표면적이 60cm² 초과된 선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을 년, 월, 일 순으로 표시하여 보질기한 계산에 따른 소비자와 시장감독관리당국의 불편을 방지한다.

c. 표준이 1차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표준 4.7.1.1에 다층 포장 날짜 표시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4.7.1.2항에서 하위 포장 식품 날짜에 대한 권장 요구사항을 추가했으며 부록에 날짜 표시 및 질량 표시 글자 높이에 대한 권장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8) 식품 생산 허가 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선포장식품의 경우, 표시 형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본 표준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9)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요구를 조정하였다. 직접 첨가되는 알레르기 물질은 권장 표시에서 의무 표시로 변경되며, 생산라인에 반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물질은 권장 표시로 한다.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표시가 면제되는 목록 내의 물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따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목록은 본문에서 부록으로 옮겨져 목록식으로 관리되므로, 중국의 알레르기 물질 관련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데 편리하다.

(10) 영양성분 라벨의 표시 요구사항을 수정하였다. 영양성분 라벨의 표시 범위 및 표시 방법은 GB 28050 또는 GB 13432에 따라 시행됨을 규정하였다.

(11) 방사선 처리를 거친 식품의 표시 요구사항이 수정되었다. 2022년 승인 버전의 공동 서명 의견에 따라 '방사선 식품'(辐照食品)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식품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 식품'(辐照食品)이라는 용어를 '방사선 처리를 거치고 가공된 식품'(经辐照加工食品)으로 조정하였다.

(12) 특수식품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추가하였다.

(13) 식품 강조표시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식품 라벨에 식품 강조표시의 사용을 표준화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식품 강조표시의 기본 요구사항을 본 표준에 통합시켰다. 식품 강조표시의 사용 목적과 감독방법에 따라 식품 강조표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일반성 강조표시, 주로 특성강조, 조건강조, 비교강조, 정량적(함량) 강조와 관능강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강조표시는 선포장식품에 사용되는 통용 강조표시라고 하며, 의무 표시 내용을 제외한 식품 또는 성분에 대한 기타 설명은 이 조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부록 E에 각종 강조표시의 구체적인 분류와 사용조건을 상세히 열거하여 식품제조업체가 상술한 강조표시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둘째, 영양 강조표시 및 영양성분 기능성 강조표시는 반드시 GB 28050과 GB 13432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셋째, 식품원료 또는 성분의 건강효과 강조표시는 반드시 '식품안전법'의 요구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건강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넷째, 건강식품 강조표시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4) 세관 부서의 관리 요구에 따라 수입 선포장식품의 표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수입 식품이 본 표준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한다.

수입 선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의무 표시 내용의 중국어 및 외국어는 일치해야

한다. 라벨에서 나오는 기타 외국어 또는 번역자의 내용은 표준 한자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하며(상표, 수입 식품의 생산자 및 주소, 외국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인터넷 주소 제외), GB 7718 제4, 5조의 요구 사항을 부합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사업주체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입 선포장식품은 수입업자/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대리상의 표시는 실제 책임주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등과 일치하며, 세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의 중국 등록번호 또는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 주관부서가 승인한 등록번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원산지 국가(지역)의 표시 요구 사항을 세분화하였다.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경우 최적사용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하여 제조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도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의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

(15) 면제 표시 내용의 요구 사항이 조정되었다. 선포장식품 패키지의 최대 표면적의 의무 표시 내용에 대한 면제 요건, 날짜 표시 등을 포함한다. 국가 무역 정책의 관련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표준 개정에서는 와인 및 알코올 도수가 10% 이상인 주류의 생산 날짜를 로트번호로 대체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생산 날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6) 권장표시내용에 관한 개정.

권장표시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권고사항과 과거 표준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에서 부록의 형식을 사용하여 예시를 추가하였다.

(17) 디지털 라벨 관련.

식품 라벨 표시 형식을 확장하고 식품 생산 기업의 혁신 및 발전 요구를 지원하며 소비자에게 식품 라벨 해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하였다. 식품 생산 기업은 디지털 라벨을 사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라벨 코드를 스캔하여 전시된 메인 페니지에 관련 라벨 내용이 표시되도록 해야 하며 팝업 광고 등이 소비자가 식품 라벨 정보를 읽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라벨은 식품 라벨에 속하며 디지털 라벨로 표시된 내용은 본 표준의 요구 사항을 부합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라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식품 전통 라벨은 본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 라벨의 전시면을 절약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지는 식품 생산자의 이름 외에 식품 회사가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여 식품 생산경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제품 표준 코드 및 집행 표준 번호를 본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할 시 관련 내용은 전통 라벨에서 면제될 수 있다.

4. 부록 수정

(1) 새로운 부록 A '선포장식품 라벨의 순중량 표시 요구 사항 및 일부 라벨 항목의 표시 형식'이 추가되었다. 표준 사용 시 순중량 글자체, 크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표준 본문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순중량 글자체, 글자 크기 등 식품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식적 요구 사항을 부록 형식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며, 예시 형식으로 선포장식품의 일부 표시 항목은 부록에 편입하였다. 식품 라벨 표시 내용의 표준화를 보장하고 시장 감독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예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2)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식품 라벨 정보를 해독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디지털 라벨의 적용을 결합하여 표준 개정에서 선포장식품의 의무 표시 내용에 대한 최소 글자 높이 요구 사항을 조정하였다. 기존 1.8mm의 기준으로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50cm² 및 400cm²에 도달할 때 최소 글자 높이가 각각 2mm 및 2.5m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의 표 1을 부록 A로 이동함과 동시에 식품 제조업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표시면을 절약하므로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분 권장 분류 표시 방법을 조정하였다.

(4) 부록 D '식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형태'를 추가하였다.

(5) 부록 E "일반 강조표시의 표시원칙"을 추가하였다.

5. 기타 내용 수정

표준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붙임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진핑 총서기의 식품안전에 대한 '가장 엄격한 4가지'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기 위해 영유아 조제 액상분유(이하 '액상분유'라 한다)가 영유아 조제분유(분말)보다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액상분유를 등록관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아래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82조 및 제124조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로 수정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법' 기존	개정초안
제81조 제4항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공식 연구 개발 보고서 및 공식의 과학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1조 제4항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 의 제품배합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공식 연구 개발 보고서 및 공식의 과학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항 영유아 조제분유는 하위 포장으로 생산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업은 동일한 제품배합을 사용하여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다.	제5항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 는 하위 포장으로 생산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업은 동일한 제품배합을 사용하여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 를 생산할 수 없다.
제82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의 등록자 또는 비안자(备案人)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2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의 등록자 또는 비안자(备案人)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등록 또는 비안(备案)된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목록을 즉시 공표하고 등록 또는 비안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기밀로 유지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등록 또는 비안(备案)된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 목록을 즉시 공표하고 등록 또는 비안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기밀로 유지한다.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기업은 등록 또는 비안된 제품배합, 생산 공정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 제조기업은 등록 또는 비안된 제품배합, 생산 공정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제12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불법 소득과 불법 생산 및 운영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료 및 기타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불법 생산 및 운영	제12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불법 소득과 불법 생산 및 운영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료 및 기타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불법 생산 및 운영

<p>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000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우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000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우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6)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의 생산 및 운영 또는 등록된 제품배합, 생산 공정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및 운영되지 않는 경우,</p>	<p>(6)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의 생산 및 운영 또는 등록된 제품배합, 생산 공정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및 운영되지 않는 경우,</p>
<p>(7) 하위 포장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한 기업에서 동일한 배합으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한 경우,</p>	<p>(7) 하위 포장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한 기업에서 동일한 배합으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액상유)를 생산한 경우,</p>